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공제(환급)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30일
------	------	----------
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상호(법인명)	①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
	주소(본점소재지)	전화번호
	제조장소재지	

신청 내용	② 품명	③ 수량	④ 규격	⑤ 단가	⑥ 가격	⑦ 세율	⑧ 세액	적요
	⑨ 공제(환급)할 세목·세액 및 납기							
	⑩ 공제(환급)사유							
	⑪ 공제(환급)사유코드							
	공제(환급)사유발생연월일			년	월	일		

환급(공제) 물품의 반출자	성명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상호(법인명)	
	주소(본점소재지)	
	반출장소	

참고 사항

위와 같이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신청하니 위 금액을 공제(환급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
세관장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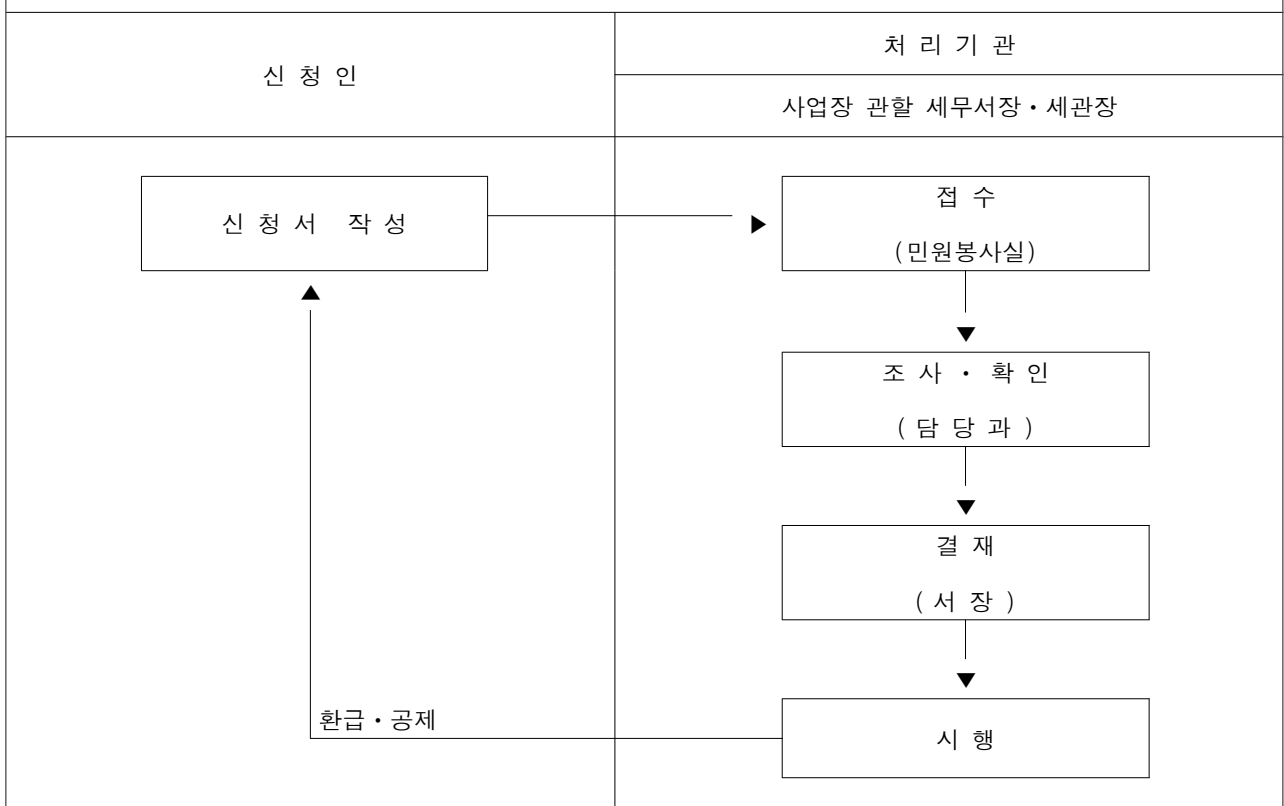
첨부서류	1. 부과납부사실증명	수수료 없음
	2. 용도제공사실증명 (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)	
	3. 원료소요량증명(수출 또는 납품하는 물품만 해당합니다)	
	4.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공제(환급)·감면 신청 명세서[공제(환급)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]	

작성방법

- ①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.
 - ② 반출되는 물품명을 적습니다.
 - ③ ~ ⑧ 순서대로 공제(환급)받고자 하는 물품의 수량, 규격, 단가, 가격, 세율, 공제(환급)받을 세액을 적습니다.
 - ⑨ 공제(환급)할 세목과 세액 및 납기를 적습니다.
 - ⑩ 공제(환급)하는 사유를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에 따라 적습니다.
 - ⑪ 공제(환급)하는 사유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.
 - 710000 반입 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(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17조제1항 및 제9항)
 - 720100 제조·가공하여 수출(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17조제2항제1호)
 - 720200 제조·가공하여 주한외국군에 납품(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17조제2항제1호)
 - 720300 과세반출한 물품을 면세물품 재료로 사용(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17조제2항제2호)
 - 740000 과세반출된 물품의 환입(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17조제2항제3호)
 - 750901 군부대 공급석유류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1조제1항제1호)
 - 770902 농업용·임업용·어업용 석유류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2제1항제1호)
 - 770903 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2제1항제2호)
 - 770904 도서지방자가발전(수협공급)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1조제1항제2호)
 - 770905 연안화물선에 사용한 석유류(경유)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1조의5)
 - 771202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[한미행정협정 제16조제3호(다)]
 - 780000 과세물품이 항공기·외국항행선박·원양어업선박에 사용(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17조제2항제4호)
 - 780100 주한외교공관등의 자동차에 사용(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17조제2항제4호)
 - 780200 과세물품이 의료용·의약품제조용·농약제조용·비료제조용 원료로 사용(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17조제2항제4호)
 - 799999 기타
- ※ 공제(환급) 사유가 2건 이상인 경우 부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교통 · 에너지 · 환경세 공제(환급) · 갑면 신청 명세서

※ 2,3쪽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3쪽 중 1쪽)

관리번호	처리기간	30일
------	------	-----

① 사업자	상 호(법 인 명)	사업자등록번호(납세번호)
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② 신청내용

[illegible]

작성방법

- ① 공제(환급) 감면 코드: 구분코드 표를 참조하여 공제·환급코드, 감면유형 코드를 적습니다. ※ 공제·환급·감면·면세 코드: <구분코드 표> 참조
- ② 품명: 휘발유, 경유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(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2조 품목의 경우에는 각각 휘발유,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, 경유,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)
- ③ 규격: 물품의 규격(L)을 적습니다.
- ④ 수량: 공제·환급 품목 수량을 L로 적습니다.
- ⑤ 단가: 과세물품의 L당 금액을 원단위로 적습니다.
- ⑥ 과세표준: 휘발유, 경유의 수량을 L단위로 기재합니다.
- ⑦ 세율: 휘발유(529원/L), 경유(375원/L).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2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.
- ⑧ 공제(환급) 감면 세액: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[별지 제18호서식의 공제(환급)사유별로 작성]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.
- ⑨ 교육세: 교육세 과세대상인 품목의 경우 공제(환급) 감면 대상 교육세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기재합니다.
⑧ 공제(환급) 감면 세액 × 교육세 세율(15%)
- ⑩ 거래처인적사항(납세번호): 반출물품을 반출·반입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⑪ 공제(환급) 감면 사유발생연월일: 공제(환급) 감면 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'2020.01.01.' 형식으로 기재합니다.
- ⑫ 공제(환급) 감면 사유: 공제·환급 사유를 직접 적습니다. (예시) 수출, 군납, 면세유 등

작성방법 <구분 코드 표>

공제(환급) · 감면 코드

일련	코드	공제 · 감면 코드	관련 법령
1	710000	반입 후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에 사용	「교통 · 에너지 · 환경세법」 제17조제1항 및 제9항
2	720100	제조 · 가공하여 수출	「교통 · 에너지 · 환경세법」 제17조제2항제1호
3	720200	제조 · 가공하여 주한외국군에 납품	「교통 · 에너지 · 환경세법」 제17조제2항제1호
4	720300	과세반출한 물품을 면세물품 재료로 사용	「교통 · 에너지 · 환경세법」 제17조제2항제2호
5	740000	과세반출된 물품의 환입	「교통 · 에너지 · 환경세법」 제17조제2항제3호
6	750901	군부대 공급석유류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1조제1항제1호
7	770902	농업용 · 임업용 · 어업용 석유류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2제1항제1호
8	770903	연안여객선에 사용한 석유류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2제1항제2호
9	770904	도서지방자가발전(수협공급)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1조제1항제2호
10	770905	연안화물선에 사용한 석유류(경유)	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1조의5
11	771202	한미행정협정에 의한 감면	한미행정협정 제16조제3호(다)
12	780000	과세물품이 항공기 · 외국항행선박 · 원양어업선박에 사용	「교통 · 에너지 · 환경세법」 제17조제2항제4호
13	780100	주한외교공관등의 자동차에 사용	「교통 · 에너지 · 환경세법」 제17조제2항제4호
14	780200	과세물품이 의료용 · 의약품제조용 · 농약제조용 · 비료제조용 원료로 사용	「교통 · 에너지 · 환경세법」 제17조제2항제4호
15	799999	기타	

※ 구분코드 표에서 "한미행정협정"은 "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(SOFA)"을 의미합니다.